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운전자 입퇴사 미보고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양도·양수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확정판결문으로 양도양수 계약서 제출을 대체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0. 00. ~ 12. 00.) 진행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해당없음(국무조정실, '25.9.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캠핑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약국자동차 및 제4호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로 한다.

제18조제3호 단서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나. 군 또는 의무경찰 복무기간에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18조의8제2항 본문 중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을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모바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일상점검”을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내용의 소송 판결

문 및 확정증명원(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관련 소송이 진행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의2제1항 중 “영 제3조의2”를 “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1조제9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0	30	-	30
---	----------------------------------	----	----	---	----

별지 제13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앞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모바일)		
성명 :	사진 2.5cm×3cm	
생년월일 :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위의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년 월 일		

(뒤쪽)

화물운송 종사자 유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본 자격증을 관할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85mm×54mm(백상지 150g/m²)

()년 ()월 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보고서

제출기관명:

운 송 사 업 현 황	운송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우편번호 주소								
	운송사업의 종류		[] 일반화물 [] 개인화물(중대형) [] 개인화물(소형) [] 운송가맹사업								
	운전자수		명		차량대수		허가대수 대				
						보유대수 대					
화물자동차 운전자 입·퇴사 현황 자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입·퇴사 구분	입·퇴사 일자	차량번호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면허종류	취득일자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발행기관명	발행일자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

점검년월		20 년 월	운송사업자명				차량번호				운수종사자명			
------	--	--------------	--------	--	--	--	------	--	--	--	--------	--	--	--

점검항목		점검결과(양호 ○, 불량 ×, 미운행시 “미” 기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외 관 점 검	1. 번호판, 전면유리, 백미러 등의 청결상태																															
	2. 후미등, 차폭등 등 등화장치 작동상태																															
	3. 와이퍼 작동상태																															
	4. 후부반사판 부착훼손 유무																															
	5. 적재함, 판스프링, 측면보호대, 후부반사판, 트레일러 연결 장치의 부식 상태																															
	6.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 (1.6mm이상)																															
상 태 점 검	7. 화물, 차량 적재 함 지지대 (판스프링) 등의 고정상태																															
	8. 바퀴 너트 등 균열상태																															
	9. 냉각수, 공기압, 엔진오일 등 차량 이상상태(계기판 확인)																															
	10. 좌석벨트 상태																															
기 타	11. 소화기 비치상태																															
	12. 비상 삼각대 등 비치																															
점검자 확인(서명)																																
불량상태 조치 기록		(예시) 00일 와이퍼 불량 - 00일 와이퍼 교체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 ----- ----- ----- ----- ----- ----- ----- ----- ----- ----- ----- ----- ---- <u>캠핑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약국자동차 및 제4호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

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
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운
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2. (생략)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
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신설>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의 발급 등) ① (생략)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
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

-----.

1.·2. (현행과 같음)

3.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나. 군 또는 의무경찰 복무기
간에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18조의8(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실을 적은 후 별지 제13호의7서
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
급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화물운
송 종사자격 등록대장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
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
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삭제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4. ~ 7. (생략)

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양도·양수 신고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모바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

3. ----- 별지 제14호의
6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
상점검표에 따라 점검 -----
--

4. ~ 7.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③ ~ ⑦ (생략)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내용의 소송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관련 소송이 진행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

----- 영 제3조제3항 -----

-----.

② (현행과 같음)